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

이 콘텐츠는 화물자동차 개인운송사업을 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화물운송 사업에 필요한 자격, 허가, 위탁 등 운영 및 양도, 폐업에 관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제공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면 자격시험을 통과하도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운송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유가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 1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념 4
1.1. 화물자동차 및 운송사업의 개념 등 4
1.1.1. 화물자동차 및 운송사업의 개념 및 종류 4
2. 화물자동차 운송 종사자격 7
2.1. 화물운송 자격증 취득 7
2.1.1. 화물자동차 운송 종사자격 7
2.1.2.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및 교육 9
2.1.3.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 10
2.1.4.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정지 11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운영 13
3.1. 운송사업의 허가 13
3.1.1. 허가기준 13
3.1.2.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16
3.2. 운송사업의 운영 17
3.2.1. 운송사업자의 의무 17
3.2.2. 운송종사자 준수사항 18
3.3. 운송사업의 경영위탁 20
3.3.1. 운송사업의 위탁 및 계약 체결 등 20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제도 24
4.1. 통행료 할인 24
4.1.1. 유료도로(고속도로 등) 통행료 할인 24
4.2. 유가보조금 지원 25
4.2.1.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 25
4.2.2. 유가보조금의 지급절차 27
4.2.3. 화물차주의 행위금지 및 준수사항 30
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등 33
5.1. 운송사업의 양도 및 폐업 등 33
5.1.1. 운송사업의 양도 및 양수 33
5.1.2.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등 34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념

1.1. 화물자동차 및 운송사업의 개념 등

1.1.1. 화물자동차 및 운송사업의 개념 및 종류

"화물자동차"의 개념

※ 이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의 법령정보에서 말하는'화물자동차'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이나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화물자동차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화물자동차"의 개념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초소형	일반형			
화물 자동차	배기량이 25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킬로와트)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최대 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특수 자동차	배기량 25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 출력이 80킬로와트)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2. 유형별 세부기준

종류	유형	세부기준
화물자동차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해서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밴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 밴형 화물자동차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것 ·승차 정원이 3명 이하일 것(호송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 차량,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는 예외)
	특수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해서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않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자동차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난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수용도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않는 특수용도인 것(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로서 경형 또는 소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중 캠핑용자동차는 제외)

※ 밴형 화물자동차 화물의 기준

밴형 화물자동차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후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

1. 화주(貨主)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일 것
2.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3. 화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가.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산물·수산물 또는 축산물
   나. 혐오감을 주는 동물 또는 식물
   다. 기계·기구류 등 공산품
   라. 합판·각목 등 건축기자재
   마. 폭발성·인화성 또는 부식성 물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개념 및 종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념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전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일반·개인화물자동차의 구별 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화물자동차 운송 종사자격

2.1. 화물운송 자격증 취득

2.1.1. 화물자동차 운송 종사자격

운송사업 종사자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아래 1.부터 4.까지의 요건을 갖춘 후 아래 5. 또는 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1.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2. 18세 이상일 것
3.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다음 내용의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경력(다음의 운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말함)이 1년 이상일 것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
   ③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으로 복무한 기간(「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한 기간을 포함) 중 화물자동차 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
4.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이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함)

> ※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및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해진 **교육**을 받을 것
6.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할 것

▪ 다만, 위 5.에 따른 시험일 또는 6.에 따른 교육일을 기준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 5.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거나 6.에 따른 교육을 이수할 수 없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 단서).

위반 시 제재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운전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제1항, 제2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18제2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범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제4항은 제외)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20년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제61조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제61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 제외): 10년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른 죄 및 제61조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제61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 제외): 15년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6년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른 죄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9년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제63조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에 한정): 4년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에 따른 죄 및 제63조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제63조제2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에 한정): 6년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각 호에 따른 죄: 2년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20년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0년

▹ 위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결격사유

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4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 또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 발생 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1.2.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및 교육

자격시험

자격시험 응시

▪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5제1항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

자격시험의 과목

▪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그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4제1항).

-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 화물 취급 요령
-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자격시험의 합격

▪ 자격시험은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합격자로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6제1항).

자격시험 합격자 교육

▪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8시간 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7제1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도로관계법령
-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 화물취급요령에 관한 사항
- 자동차 응급처치방법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위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7제2항).

>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S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https://lic.kot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교통안전체험교육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5제2항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16시간으로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4제2항).

> ※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자세한 과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이수기준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16시간의 과정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이수자로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6제2항).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6제5항 및 별지 제13호의4서식).

2.1.3.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발급신청서 제출

▪교통안전체험교육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8제1항 및 별지 제13호의5서식).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및 종사자격증명의 재발급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기재사항에 착오나 변경이 있어 이의 정정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9 및 별지 제13호의5서식)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 사진 1장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자격증명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 사진 2장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및 반납**

·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화물자동차 밖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운전석 앞 창의 오른쪽 위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10제1항).

· 운송사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여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10제3항).

√ 사업의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위반 시 제재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2.1.4.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정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정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정지 사유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 제63조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14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 취소**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호)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4호)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 취소**

3.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개시 명령(「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4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1차 위반은 **자격 정지 30일**, 2차 위반은 **자격 취소**

4.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1)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격 취소**

2)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사망자 2명 이상: **자격 취소**

√ 사망자 1명 및 중상자 3명 이상: **자격 정지 90일**

√ 사망자 1명 또는 중상자 6명 이상: **자격 정지 60일**

5.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자격 취소**

6.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기간 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우: **자격 취소**

7.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자격 취소**

8.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택시 유사표시행위, 전기·전자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제7호 및 제9호)를 한 경우: 1차 위반은 **자격 정지** 60일, 2차 위반은 **자격 취소**

9.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 취소**

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 제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자격 취소**

▪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화물운송 종사자격은 효력을 잃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2항).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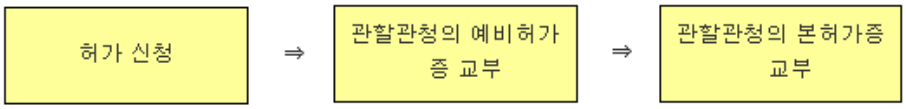
3.1. 운송사업의 허가

3.1.1. 허가기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허가 절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절차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허가신청

▪다음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 차고지 설치 확인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및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제작증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 ※ "임시허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수탁계약의 위·수탁차주였던 사람이 허가취소 또는 감차(減車) 조치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2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전속 운송계약[물류취약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권한이 재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속이 아닌 운송계약을 포함]을 통해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위의 서류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택배용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제4조제1항).

- 택배 운송만을 담당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일 이후부터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제3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택배 운송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 계약서 또는 장래 운송물량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택배 운송사업자의 확인 증명 필요)

허가기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3조의2 및 별표1).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맞을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2항)

√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기간 내에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3개월 내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3항)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이 1.5톤 미만인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에 대해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화물자동차의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기준에 맞을 것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허가 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전단 및 제19조제1항).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가 취소(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위반 시 제재

▪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제1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사유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減車)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 제63조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및 제14조제10호).

-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허가를 받은 후 6개월간의 운송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가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 변경허가에 따른 조건 또는 기한을 위반한 경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직접운송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 1대의 화물자동차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운송사업자, 운송사업자가 채용한 운수종사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1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한 경우
-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減車)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사람이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 석유판매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수소판매사업자(이하 "주유업자등"이라 함)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 주유업자등으로부터 유류 또는 수소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서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 또는 수소 구매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 다른 운송사업자 등이 구입한 유류 또는 수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소명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 실적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차령(車齡) 13년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3.1.2.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변경허가

변경허가 절차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본문).

▪ 변경허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는 제외)를 받으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

1.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 확인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및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및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제작증
3. 운송사업자가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移轉)하기 위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위반 시 제재

▪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나 위반차량 감차(減車) 조치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받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2호).

▪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제1호).

변경신고

변경신고 사유

▪ 운송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함) 또는 위탁 공공기관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단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

3.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4. 화물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

5.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주사무소 이전의 경우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의 이전만 해당)

변경신고 절차

▪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서 협회 또는 위탁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별지 제8호서식).

위반 시 제재

▪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1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가목).

3.2. 운송사업의 운영

3.2.1. 운송사업자의 의무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의 의무적 가입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화물의 멸실(滅失)·훼손(毁損) 또는 인도(引渡)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 ※ “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책임이행으로 발생할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합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가입대상

▪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일반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13제1항 및 제2항).

배상보험 등의 내용

▪ 배상보험 등(“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를 말함. 이하 같음)은 사고 1건당 각각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여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7제1호).

위반 시 제재

▪ 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화물자동차 1대당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15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서목).

※ 배상보험 등의 종류와 가입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공제조합**(www.truc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적재물배상 공제사업 등에 관한 업무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www.kta.or.kr)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임 및 요금의 신고

운임 및 요금의 사전 신고

▪ 다음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해서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전단, 제2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

√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해서 고장차량·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신고 방법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5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지 제11호서식).

1. 원가계산서(행정기관에 등록한 원가계산기관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것을 말함)
2. 운임·요금표[구난형(救難型)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구난작업에 사용하는 장비 등의 사용료를 포함]
3. 운임 및 요금의 신·구대비표(변경신고인 경우만 해당)

위반 시 제재

▪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나목).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운송사업자의 적재물사고 배상책임

▪ 화물의 멸실(滅失)·훼손(毁損) 또는 인도(引渡)의 지연(이하 "적재물사고"라 함)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사람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적재물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제1항 및 「상법」 제135조).

3.2.2. 운송종사자 준수사항

화물자동차 운행 시 준수사항

준수사항

▪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3.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해서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5.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呼客)하는 행위

6.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7.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다음의 택시 유사표시행위

   가. 택시 요금미터기 등 요금을 산정하는 전자장비의 장착

   나. 화물자동차의 차체에 택시유사 표시등의 장착

   다. 화물자동차의 차체에 택시·모범 등의 문구 표시

8.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따른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20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7)를 하지 않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9.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이동방향의 결정을 주로 담당하는 조향장치에 추가되어 운전자의 조향을 보조해주는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운행의 확보와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제2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1. 운행하기 전에 운수종사자 일상점검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라 점검 및 확인을 할 것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수종사자의 경우 고장·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하지 않을 것(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고장·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사망·중상 등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나. 교통의 원활한 흐름 또는 안전 등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차량의 이동을 명한 경우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수종사자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요금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은 후 운송을 시작할 것. 다만, 다음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가. 고장·사고차량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있는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른 통지 및 구난동의를 받을 것

   1)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주·정차 가능 구역까지의 운임·요금에 대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할 것

   2) 주·정차 가능 구역에서 1)에 따른 운임·요금을 포함한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요금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을 것

   나. 고장·사고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사망·중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난동의 및 통지 생략 가능

4. 휴게시간 없이 2시간 연속운전한 후에는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질 것.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함

가. 운송사업자 소유의 다른 화물자동차가 교통사고, 차량고장 등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교통사고, 차량고장 또는 교통정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2시간 연속운전 후 휴게시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5.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표시장치를 시청·조작 등을 하지 말 것

위반 시 제재

▪ 위 준수사항(4.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해서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제외)을 위반한 경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6조제2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6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차목)

1)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않거나 전기·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함)를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조작(「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2) 위 1)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0만원

▪ 위 준수사항 중 4.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해서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제3호).

> ※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의 『교통·운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 운송사업의 경영위탁

3.3.1. 운송사업의 위탁 및 계약 체결 등

운송사업의 위탁

위·수탁 계약의 체결

▪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함)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

▪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량소유자·계약기간, 다음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의 당사자가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고시하여야 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4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1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 계약기간 및 계약갱신
- 차량소유자
- 금전지급(지급금액과 지급시기를 포함) 및 채권·채무 관계

- 차량의 대폐차
- 차량의 관리 및 운영
- 교통사고보상 및 사고처리
- 적재물배상보험 등 보험가입
- 운수종사자 교육
- 계약의 해지사유
- 위·수탁계약에 대한 상호통지
- 협회의 계약내용 확인
-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합리적 경영위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5항)

위·수탁계약의 갱신

▪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제1항,「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0제1항 및 제2항).

- 최초 위·수탁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수탁계약기간이 6년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위·수탁차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 √ 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위·수탁차주가 계약기간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 나. 위·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다. 신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등 운송사업자의 요청 또는 지도·감독을 위·수탁차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 최초 위·수탁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수탁계약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위 위·수탁차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가.~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수탁계약상의 월지급액(월 2회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합을 말한다)을 6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위·수탁계약상의 월지급액이 같은 업종의 통상적인 월지급액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른 표준 위·수탁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조건을 위·수탁차주가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 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경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

▪ 운송사업자가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수탁차주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제2항).

▪ 운송사업자가 위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수탁차주에게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위·수탁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위·수탁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제3항 본문).

※ 다만, 위·수탁차주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운송사업자나 위·수탁차주에게 천재지변이나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제3항 단서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0제3항).

- 운송사업자가 사고·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위·수탁계약의 갱신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 위·수탁차주의 소재 불명이나 국외 이주 등으로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주에게 위·수탁계약의 갱신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위·수탁계약의 해지

▪ 운송사업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제1항 본문).

※ 다만, 다음과 같은 위·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지 절차의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제1항 단서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1제1항).

- 위·수탁차주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위·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 위·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의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 위·수탁차주가 사고·질병 또는 국외 이주 등 일신상의 사유로 더 이상 위탁받은 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수탁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제2항).

▪ 운송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위·수탁차주의 화물자동차가 감차 조치의 대상이 된 경우에만 해당)를 받은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위·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제3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1제2항).

-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라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다만, 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하면 허가를 취소하지 않음)
- 그 밖에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위·수탁차주의 고의로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사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2, 제5호 및 제7호의4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위·수탁계약의 양도·양수

▪ 위·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위·수탁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4제1항 본문).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는 양수인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위·수탁계약의 양도에 대한 동의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4제1항 단서).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등으로 자신이 위탁받은 경영의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위·수탁차주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위·수탁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사람은 양도인의 위·수탁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4제2항).

▪ 위·수탁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위·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양도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운송사업자가 양도에 대한 동의를 거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사업자가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4제3항 및 제4항).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제도

4.1. 통행료 할인

4.1.1. 유료도로(고속도로 등) 통행료 할인

심야시간 할인

심야시간 할인

▪ 심야에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화물자동차는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7호가목).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하지 않되, 그 구체적인 기준과 기준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릅니다(「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단서).

-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유료도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통행료 할인대상 차량 및 시행기간

▪ 「유료도로법」상 할인대상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이용하는 3축 이상의 화물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입니다(「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7호가목).

할인율

▪ 화물자동차는 고속국도 운행시간(고속국도의 진입요금소 통과 후 진출요금소를 통과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함)에서 심야시간대를 운행하는 시간의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2호마목1) 및 제3호가목].

심야시간대 운행시간 비율에 따른 적용할인율		
운행시간 비율	70% 이상	20% 이상 70% 미만
적용할인율(%)	50	30

▪ 한편,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개방식 요금소(진출입 요금소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고속국도의 요금소로 통과할 때 일정 요금을 납부하는 요금소를 말함)를 통과하는 차량은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2호마목2)].

경형자동차 및 출퇴근시간 할인

경형자동차 할인

▪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중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는 유료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3항제2호다목).

1. 배기량이 1천시시 미만일 것

2. 길이가 3.6미터, 너비가 1.6미터, 높이가 2.0미터 이하일 것

※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위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출퇴근시간 할인

▪ **통행료의 100분의 20**: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중 진·출입 요금소간 거리를 기준으로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로서 출·퇴근시간대(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에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이용해 통행료를 납부하고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3축 미만의 화물자동차(「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8조제3항제4호)

> ※ 이 경우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라 할인받는 화물자동차는 제외합니다.

▪ **통행료의 100분의 50**: 위의 차량 중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또는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시간대에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8조제3항제2호라목)

4.2. 유가보조금 지원

4.2.1.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

"유가보조금"의 개념

"유가보조금"의 개념

▪ “유가보조금”이란 다음의 금전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4조제1호).

-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
-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2026. 6. 26.> 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가 연동 보조금"
- 2021년 수소연료 가격보조 제도 도입에 따라 수소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수소 연료보조금"

▪ 유가보조금은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가 지급 업무를 관장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5조).

유가보조금의 지급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자동차용 부탄 및 자동차용 수소(이하 각각 “경유”, “LPG”, "수소"라 함)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조).

▪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청구에 따라 해당 차량의 화물차주에게 지급합니다. 운송사업의 경우 직영차량은 운송사업자에게, 위·수탁차량은 위·수탁차주에게 지급 청구·수령권이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0조제1항).

지급범위

▪ 유가보조금은 다음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6조제1항).

▹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허가받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증차한 경우는 제외)가 구매한 유류에 대하여 지급할 것

▹ 경유, LPG 또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사업 또는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않는 차량일 것. 다만, 화물자동차 유가 연동 보조금(「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4조제1호나목)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만 적용할 것

▹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해당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을 갖춘 사람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범위 내에서 당해 용도로 차량을 운행할 것

▹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차량의 연료와 일치하는 유종을 차량에 직접 주유 받을 것

▹ 실제 주유내역과 차량의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의 수급자명·자동차등록번호·일시·장소·주유량·유종·단가·주유금액 등 내역이 일치할 것

▹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국가간 조약·협정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면세유)를 공급받은 사람 또는 차량이 아닐 것

지급한도량 설정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량(이하 ´지급한도량´이라 함)은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7조제1항).

톤급 구분	1톤 이하	3톤 이하	5톤 이하	8톤 이하	10톤 이하	12톤 이하	12톤 초과
월 지급한도량(ℓ)	683	1,014	1,547	2,220	2,700	3,059	4,308

▪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의 지급한도량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 지급한도량의 50%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7조제2항).

▪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의 지급한도량은 총중량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7조제3항).

구 분	총중량 10톤 미만	총중량 10톤 이상	총중량 20톤 이상
구난형	683ℓ	1,014ℓ	1,014ℓ
특수작업형	683ℓ	683ℓ	1,014ℓ

▪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량은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7조제4항).

톤급 구분	10톤 이하	12톤 이하	12톤 초과
월 지급한도량(kg)	807	913	1,284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신규로 허가(양수·법인합병·상속, 위·수탁차주 변경 및 지급한도량 변경을 포함)받은 차량에 대한 월 지급한도량은 해당 일을 기준으로 일할하여 계산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7조제5항).

▪ 그 밖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지급한도량 설정의 예외를 둔 사항은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7조제6항).

유가보조금 지급액 산정

▪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주유업자가 통보한 주유량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한도량의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9조제1항).

▪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의 지급단가는 유류 구매일 현재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경유 리터당 183.21원, LPG 리터당 23.39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8조제1항).

▪ 화물자동차 유가 연동 보조금의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8조제2항).

- {경유가격(원/ℓ)-기준가격(1,700원/ℓ)}의 70%. 다만, 183.21원/ℓ을 초과하지 못함
- 지급단가를 산정할 때 경유가격은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하는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를 통하여 발표하는 자료에 의하되, 차량의 등록지에 속하는 "지역별 주유소 평균가격"에서 주유받은 직전 주의 평균가격을 적용함. 다만, 지역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할 수 있음

▪ 수소화물차에 사용되는 연료보조금에 대한 지급단가는 5,000원/kg으로 합니다. 다만, 향후 화물자동차 연료의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하여 수소화물차 연료보조금 단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8조제3항).

4.2.2. 유가보조금의 지급절차

유가보조금의 지급절차

유류구매카드 사용자에 따른 지급절차

▪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1조).

구분	청구 및 지급절차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1. 화물차주가 유류를 구매하고 즉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 2.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유류구매카드 거래내역 전송 3. 카드협약사는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대금 결제일에 유가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인출, 체크카드의 경우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결제금액을 인출하고 3일 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 4.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결제한 해당 월 전체 거래금액 중 화물차주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액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관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 이하 "관할관청" 이라 함] 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청구 5.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가보조금액을 카드협약사에 지급
거래·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1. 화물차주가 외상거래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할 때마다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기록·확인하고, 외상거래 결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로 거래내역을 사후 결제(체크카드로 즉시 결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확인) 2.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외상거래 내역 전송 3. 화물차주가 주유소와 외상거래 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결제금액을 인출하고 3일 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 4.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결제한 해당 월 전체 거래금액 중 화물차주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액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청구 5.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가보조금액을 카드협약사에 지급
거래확인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1. 화물차주가 유류구매 즉시 현금 등으로 거래금액을 결제하고 거래확인카드로 거래내역을 기록·확인 후 주유업자로부터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각각의 주유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체크·직불·선불카드영수증 등을 말함) 수령 2.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유류구매 거래내역 전송 3.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거래확인카드 사용내역 명세서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도록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해 해당 거래내역 통보 4.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및 거래확인카드 사용내역 명세서(한도관리 시스템에서 출력)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서류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 5.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화물차주 계좌에 유가보조금 입금

자가주유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1. 화물차주가 주유 즉시 자가주유카드로 인식된 차량의 주유내역을 기록·확인하고 주유량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카드협약사의 한도관리 시스템으로 전송 2.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자가주유 내역 전송 3.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및 자가주유 내역 명세서(한도관리 시스템에서 출력)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서류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 4.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화물차주 계좌에 유가보조금 입금

※ 유류구매카드 발급

· 화물차주는 카드협약사별로 차량 한 대당 한 장의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협약사는 자체 신용등급 기준에 따라 화물차주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유류구매카드의 종류를 안내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5조제1항).

1.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거래·체크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합니다.
2. 신용카드 발급은 불가능하나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체크카드 또는 거래·체크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합니다.
3. 카드협약사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발급이 제한되는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거래확인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청 기준을 적용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6조).

1. 다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인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체크카드 또는 거래·체크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합니다. 다만 화물차주가 요청할 경우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대하여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가주유시설을 이용하는 화물차주는 자가주유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유류구매카드 미사용자에 대한 지급절차

▪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2조).

- 화물차주는 유류구매 즉시 현금 등 유류구매카드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금액을 결제하고 주유업자로부터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 수령
-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관청에 서류신청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수소연료보조금의 경우, 별도로 구축된 온라인 서류신청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할관청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화물차주 계좌에 유가보조금 입금

※ **서류신청의 방법**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차주는 관할관청에 서류신청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청구·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5조).

1. 거래확인카드를 사용한 때
2. 자가주유카드를 사용한 때
3.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때
4. 거래·체크카드 사용자의 경우 주유소의 폐업 등으로 외상거래 내역을 결제할 수 없거나, 화물차주의 폐업(양도, 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으로 카드가 말소되거나 사용이 중단되어 외상거래 내역을 결제하지 못한 때
5.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 중인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때(다만, 최초 서류신청분에 한정하며, 관할관청은 화물차주에게 이를 확인해야 함)
6. 유류구매카드 거래 시 주유소에서 유종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유가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경우로서, 카드협약사 사후 지급 신청기간(카드거래 다음 달 3일까지)이 경과한 때
7. 그 밖에 천재지변·불가항력 등 관할관청에서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8. POS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주유소(충전소는 제외)에서 유류를 구매한 때(다만, 최초 서류신청분에 한정하며, 관할관청은 화물차주에게 이를 확인해야 함)
9.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탱크용량을 초과하여 주유한 사유로 유가보조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실제 탱크용량을 초과하지 않은 때. 이 경우 화물차주는 실제 탱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함

4.2.3. 화물차주의 행위금지 및 준수사항

화물차주의 행위금지 사항

화물차주의 행위금지 사항

▪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제1항).

1. 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운송실적 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2.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제 또는 거래내역을 입력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4. 다른 화물차주가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6.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함)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8.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9.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 또는 판매하거나,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유류 등(면세유,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 유사석유, 혼합유 등을 포함)을 알고도 구매 또는 판매하는 행위

10.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외상거래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

11.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 청구와 관련된 관계서류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32조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폐기처분하는 행위

12. 유류구매카드를 주유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위탁·보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1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의 처분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14.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당해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이 없거나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15.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16.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장치 변경사항 중 다음 어느 하나를 승인받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가. 구조변경: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나. 장치변경: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위반 시 제재

▪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위 행위금지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화물차주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제1항).

1. 화물차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의 환수
2.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 환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기 보조금에서 환수금액 차감
3.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

▪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위와 별개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제1항 행위금지 사항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減車)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제2항 및 제3항).

1.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3.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위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 감차(소유한 화물자동차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허가취소)

※ 화물차주의 준수사항

·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화물차주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35조).

1. 화물차주는 유류구매카드 사용 및 유가보조금 청구·수령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2. 화물차주는 관할관청이 유가보조금의 적정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소명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3.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 서류신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관청의 서류신청 지급주기와 지급계획을 확인해야 하며, 서류신청 대상기간 및 서류제출 기한에 맞춰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4. 화물차주는 주유소에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유류구매카드에 기재된 자동차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주유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5. 화물차주는 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유종 등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하고 15일 내에 카드협약사에 교체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6. 화물차주는 대·폐차, 구조·장치변경 등으로 유종 또는 지급한도량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즉시 관할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7. 화물차주는 휴·폐업, 양도(법인합병, 상속, 위·수탁계약 해지를 포함), 사업·운행의 제한(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을 말함), 정보변경(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유종을 말함) 또는 의무보험 미가입 등의 경우 유류구매카드로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등

5.1. 운송사업의 양도 및 폐업 등

5.1.1. 운송사업의 양도 및 양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사업양도·양수의 범위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수를 초과하여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주사무소가 양도인의 주사무소와 같은 시·도 내에 있는 같은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는 하나의 같은 시·도로 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기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5602호, 2018. 4. 17.)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수 미만으로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기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는 양도·양수신고일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할 수 있음)

양수인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할 수 없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16조제7항).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에 따라 허가가 취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사업양도·양수 신고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제63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7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시·도지사"를 말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2항).

- 양도·양수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 정본 및 판결확정증명서로 대체 가능)
- 양수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
-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그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 정본 및 판결확정증명서로 대체 가능)
- 차고지 설치 확인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양도·양수가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 양수된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사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사업양도·양수의 제한

- 시·도지사는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5항).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다음 구분에 따른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본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 그 허가를 받은 날(다만,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수탁차주에 대한 허가로 인하여 차량을 충당한 경우는 그 차량 충당의 변경신고일로 함)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 양도·양수신고일
- 다만,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6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단서 및 제6조제3항).

위반 시 제재

- 사업양도·양수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8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파목).

5.1.2.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1항·제63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항).

▹ 사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운송사업자가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

▪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나 그 밖에 일반 공중(公衆)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3항).

위반 시 제재

▪ 사업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9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하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사업의 상속

▪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9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63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

▪ 상속인이 위의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보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제4항 및 제5항).

위반 시 제재

▪ 사업 상속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8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파목).